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법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고시 개정 안내(2014-88, 89호)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88, 89호(2014.6.10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4호, 2014. 1. 27) 및 「의료법」 제53조제3항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- 68호, 2014. 5. 14.)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※ 붙임 : 1. 고시 2014-88호 개정문

2. 고시 2014-89호 개정문 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/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대리 유소영 팀장 정윤학 팀장 노환우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301 (2014.06.11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sy@kha.or.kr